

# 충남대학교 대학원 농화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1차 개정 2015. 4.20.

2차 개정 2017. 2.1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농화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과정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학과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은 지도교수가 별도로 정하되, 석사학위 과정생은 3과목(석사 16학점이수자)으로, 박사학위 과정생(박사 24학점이수자)과 석·박사통합 과정생은 4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4.20.)

②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으로 하고,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논문 지도위원회 구성)** ① 박사학위 과정생은 3학기 재학 중에 3인 이상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한 학기 이전에 논문연구 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7. 2.17.)

**제6조(박사학위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논문 3편 이상을 발표하되, 최소 1편 이상은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학진등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다만, SCI, SCIE, SCOPUS에 2편 이상 발표된 경우에는 의무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4.20.) (개정 2017.2.17.)

- 1. (삭제 2017.2.17.)
- 2. (삭제 2017.2.17.)
- 3. (삭제 2017.2.17.)
- 4. (삭제 2017.2.17.)
- 5. (삭제 2017.2.17.)
- 6. (삭제 2017.2.17.)

② 제1항의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공저한 학술지 논문만을 인정한다.(개정 2017. 2.17.)

③ 제1항의 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도 이를 인정한다. (신설 2017. 2.17.)

④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된 1건은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등록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박사 후보자는 학위논문의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최소 1편 이상은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학진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 인정한다. (신설 2017. 2.17.)

**제7조(석사학위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하며,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학진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신설 2017.2.17.)

- ② 제1항의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공저한 학술지 논문만을 인정한다. (신설 2017. 2.17.)
- ③ 제1항의 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도 이를 인정한다. (신설 2017. 2.17.)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1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학술지게제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 부 칙(2017.2.1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게제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